

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_ 규칙 제46조(공급물량의 3% 범위 내)

| 구분 | 74A | 74B | 84A | 84B | 99 | 계 |
|----------|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총 세대수 | 224 | 24 | 144 | 75 | 377 | 844 |
| 배정 세대수 | 6 | - | 4 | 2 | 11 | 23 |
| 구분 | 내용 | | | | | |
| 대상 & 공급 | 공급물량의 3% 범위 내(총 23세대) | | | | | |
| 청약자격 |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오산시 및 수도권(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)에 거주하는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 ② 청약통장 有(12개월) ③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) | | | | | |
| 당첨자 선정방법 | ① ① 지역 → ② 가점 →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→ ④ 추첨 ② ① 지역: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오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30%,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0%,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)에 거주한 자 50% 순으로 우선공급하고,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 ③ ② 가점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1(가점제 적용기준)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 ※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선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. ④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: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(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) | | | | | |
| 청약통장 | 주택형 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. 청약예금: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. 청약부금: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. 주택청약종합저축: 지역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| | | | | |
| 유의사항 | ※ 무주택세대주만 청약 신청 가능(세대 구성원 청약 불가) ※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,도 거주 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※ 무주택기간 산정 시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, 노부모[피부양자(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)]를 포함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 -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※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. ※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(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)이 주택(분양권 포함)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※ 소형·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 인정(23.11.10개정) | | | | | |

※ 상기 내용이 입주자모집공고와 상이할 수 있으며, 상이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와 우선합니다.

※ 본 홈페이지는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사항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, 단지 및 세대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 견본주택 또는 견본주택 내방을 통해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.

※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·인허가·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청약자격 미숙지 및 착오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자세한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해당 공급 특별공급 운용지침,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홈페이지와 입주자모집공고 및 견본주택이 상이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및 견본주택이 우선합니다.